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78

2025. 6. 19.
기획경제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5월 26일, 임춘대 의원 등 25명
2.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3.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2025. 6.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임춘대 의원)

1. 제안이유

○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을 규정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이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서울시는 도시형 · 소규모 농업 현장에 특화된 안전관리 체계가 부족하여 고령 농업인 · 근로자 등의 사고·질병 위험이 지속되고 있음.

○ 특히 다양한 작업환경에서 기계 전복 · 추락 · 온열질환 등 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위험성 진단 · 개선, 보험료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통합적 예방 · 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서울시 차원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한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규정함(안 제6조).
다.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Ⅲ. 검토의견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조례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관련된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예방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 농업인이 농업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줄이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됨.

2. 조례안의 입법 배경

○ 국제노동기구(ILO)는 농업을 광업·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농업은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실외 활동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농약 등 화학물질의 노출 위험도가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3년 농업 분야 산업재해율은 0.76%로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0.65%) 보다 약 1.2배 높은 수준임.

○ 국내 농업은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촌 공동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영농기계 및 농약에 대한 의존도 증가로 안전재해에 더욱 취약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서울시의 농가는 전국 농가(973,707가구)의 약 0.52%에 해당하는 5,084가구이며 농가인구는 전국 농가인구(2,003,520명)의 약 0.61%에 해당하는 12,298명으로 나타남.

- 서울시 농가인구 성별 구성은 남성 6,526명(53.1%), 여성 5,772명(46.9%)으로 남성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24년 서울특별시 농가 및 농가인구 현황 >

지역	농가(가구)	농가인구 (명)		
		합계	남	여
전국	973,707	2,003,520	978,935	1,024,585
서울특별시	5,084	12,298	6,526	5,772

○ 특히 서울시 농가인구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8,366명으로 서울시 전체 농가인구의 68.03%를 차지하여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4년 서울특별시 60세 이상 농가인구 현황 >

연령비율	농가인구(명)	60세이상 농가인구(명)	60세이상 비율(%)
서울특별시	12,298	8,366	68.03

○ 이처럼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기계 이용 증가 등으로 인해 농업재해에 따른 업무상 질병 유병률이 매면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 대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이에 정부는 농어업인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생업 종사 여건을 조성하고자 2015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제정(2015.1.6.)하였음.

○ 이후 2022년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기술 등의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사업, 안전재해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다양한 사업이 신설됨[1].

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의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한편 서울시는 농업작업 재해예방을 위해 ▸농업기계 안전교육,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극한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농업작업 재해예방 관련 최근 3년 사업 현황(농업기술센터)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26,500) 53,000	(×29,500) 59,000	(×59,500) 119,000
농업기계 안전교육	(×1,500) 3,000	(×1,500) 3,000	(×3,000) 6,000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25,000) 50,000	(×25,000) 50,000	(×25,000) 50,000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	(×3,000) 6,000	(×3,000) 6,000
극한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	-	(×28,500) 57,000

○ 농업인이 농업노동 중 재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농업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동 조례안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조례안의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의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이는 농업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나아가 농업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려는 취지임.

(나)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작업'. '농업근로자', '농업작업안전재해',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조 항	용 어	정 의
제2조제1호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제2조제2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제2조제3호	농업작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
제2조제4호	농업근로자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제2조제5호	농업작업안전재해	농업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제2조제6호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보험
제2조제7호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법 제16조의3 제3항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인정한 자

○ 이러한 정의 규정은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바탕으로 하며 조례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요 개념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조례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임.

(다)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농업작업 현장에서 재해 예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 이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임.

(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 등(안 제6조)

○ 안 제6조는 농업안전재해 감소를 위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목표 및 추진방향, ▸세부추진계획, ▸교육·홍보,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 이는 농업안전재해 감소를 위한 구체적·전략적인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임.

○ 다만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이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주기적인 성과평가와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 절차를 함께 마련하여 계획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마)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안 제7조)

○ 안 제7조는 농업작업안전재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농업작업재해 예방 관련 ▸기술보급·지도, ▸교육·홍보, ▸농업작업 환경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4조에 근거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고 서울 소재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며 보험료는 정부 50%, 서울시 10%, 자부담 40%의 비율로 설계되어 지원됨.

○ 이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고려한 기술보급 및 농업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할 수 있음.

4. 종합의견

○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 실정에 맞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입법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는 단순한 산업재해를 넘어 농업 생산 기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련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보급, 교육·홍보, 위험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춘대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778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임춘대, 강석주, 고광민,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윤종복, 이성배, 이숙자, 이은림, 이종태, 이종환,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25명)

1. 제안이유

○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을 규정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이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서울시는 도시형·소규모 농업 현장에 특화된 안전관리 체계가 부족하여 고령 농업인·근로자 등의 사고 질병 위험이 지속되고 있음.

○ 특히 다양한 작업환경에서 기계 전복·추락·온열질환 등 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위험성 진단·개선, 보험료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통합적 예방·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서울시 차원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한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규정함(안 제6조).

다.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근로자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감소를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3.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지도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7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를 근거로 한 각종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서울시 관련부서(민생노동국 농업기술센터) 문서 확인결과 이는 **기추진사업**[1]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기추진사업]** 서울시 민생노동국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을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❶ 서울시 민생노동국 2025년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 **6,000천원**
- 농업인 안전교육, 안전 자료 제작 및 보급

❷ 서울시 민생노동국 2025년 <농업 재해보험 지원(국가직접지원)> : **100,000천원**
-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험료 일부지원

❸ 서울시 민생노동국 2025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 **50,000천원**
- 농작업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안전장비 활용 등 기계적·물질적 안전조치